

[별지 제38호서식] (규칙 제61조제3항 관련) <개정 2010.1.25>

(정강·정책홍보물)·(정책공약집)·(정당기관지)제출서

1. 배부지역
2. 배부당부
3. 배부내역

품 명	배부가능수량	배부수량	배부방법	비 고
정강·정책홍보물				
정 책 공 약 집				
정 당 기 관 지				

년 월 일 (실시하는)·(실시사유가 확정된) ○○선거에서 「공직선거법」 (제138조)·(제138조의2)·(제139조)에 따라 (정강·정책홍보물)·(정책공약집)·(정당기관지)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덧붙임 : (○○정강·정책홍보물)·(정책공약집)·(정당기관지) (2부)·(2권)·(각 2부)

년 월 일

제출인 [○○당 [인]]  
[대표자 ○○○ (인)]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- 주 : 1. “배부지역”은 배부할 선거구명 또는 행정구역명 등을 기재합니다.  
2. “배부가능수량”은 정강·정책홍보물의 경우 배부대상지역의 소속당원수를, 정당기관지의 경우 그 동안의 통상적인 배부수량을 기재합니다.  
3.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“배부가능수량”은 “판매하려는 수량”을, “배부방법”에는 “판매하려는 장소”를 기재하고, “비고”란에는 권당 가격을 기재합니다.  
4. 정강·정책홍보물, 정책공약집, 정당기관지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